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산수리 보존처리제 정의 및 관리 규정 마련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08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가유산수리 보존처리제 정의 및 관리 규정 마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임오경 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1. 15.

다. 회 부 일: 2025.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Ⅲ. 검토의견

1. 국가유산수리 보존처리제 정의 및 관리규정 마련(안 제2조 및 제7조)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보존처리제”란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보존처리 등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u>
2. ~ 17. (생략)	2. ~ 17.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방제</u>
4. (생략)	<u>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고, 수리로 인하여 국가지정유산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¹⁾.
- 한편, 충·균해 등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국가유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국가유산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제기술이 필요함.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에 훈증소독, 저산소·저온·방사선 처리 등 다양한 방제기술을 적용한 결과, 산화에틸렌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약제를 사용한 훈증처리가 국가유산의 생물피해 방지에 가장 효과적·안정적인 방제법임을 확인한바 있음(자료: 참고 1).
- 그런데, 훈증처리 약제로 사용되는 산화에틸렌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에 따라 기존 살생물제의 승인유예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²⁾(자료:참고 2).
-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에 산화에틸렌 등의 보존처리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보존처리제에 대해 새로이 정의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를 안정적·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수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등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가유산수리에 살생물제인 산화에틸렌을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보존처리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발의·의결을 전제로 함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 조문내용은 [참고 3] 참조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국가유산 훈증제 및 방제법 연구

○ 연구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

○ 연구내용

(1) 훈증약제 연구

-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방제기술 개발 연구(2009년)

* SF는 금속(구리), 안료(장단, 석간주)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변색이 나타났으나 산화에틸렌을 사용하는 약제 2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임.

대상 약제	시험편	연구 결과
산화에틸렌 15% + HFC _{134a} 85%	- 섬유: 삼베, 비단, 면 (면 염색 염료: 쪽, 홍화) - 지류: 닥지 - 안료: 장단, 황연, 지당, 철흑 - 금속: 구리, 은	- 일부 재질의 변색이 확인되나 그 정도는 경미하며, 연구 대상 중 가장 안정적 -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정도의 변색 발생하지 않음 - 비점이 높아 폭발 위험이 있으며, 액상으로 직접 처리하므로 국가유산 표면의 접촉 우려 있음 - 15도 이상에서 훈증소독하는 것을 권장
산화에틸렌 20% + CO ₂ 80%		
설퍼릴 플루오라이드 (Sulphuryl Fluoride)		- 안료(장단, 석간주), 구리, 한지에서 대조군에 비해 변색 정도가 크며 특히 구리와 장단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변색 발생

-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약제 평가기술 개발 및 인정기준 연구(2013년)

* EDN은 살생물력과 목재 침투력은 뛰어나지만, 섬유·염료·금속 등에서 현저한 변색이 나타나 국가유산용으로 사용이 어려움. 산화에틸렌은 금속 시험편에서 변색이 나타났으나 이는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발생한 변색이며 큰 차이가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임.

대상 약제	시험편	연구 결과
에탄디니트릴 (Ethanedinitrile, EDN)	- 목재: 소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 섬유: 삼베, 모시, 면, 견 (염색 염료: 쪽, 홍화, 황벽) - 안료: 연백, 장단, 황연 - 금속: 구리, 납, 은, 알루미늄	- 살생물력 및 목재 침투력 평가 결과 우수 - 염색하지 않은 섬유, 홍화 염색된 면·모시에서 변색 - 납 시험편에서 변색 발생
산화에틸렌 14% + 메틸 브로마이드 86%		- 목재침투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납, 은 등에서 시험편과 대조군 모두 변색 발생
산화에틸렌 15% + HFC _{134a} 85%		- 목재침투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납, 은 등에서 시험편과 대조군 모두 변색 발생
산화에틸렌 10% + HFC _{124b} 90%		- 목재침투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납, 은 등에서 시험편과 대조군 모두 변색 발생

- 문화유산 훈증소독용 대체약제 관련 연구(2014년)

* 산화에틸렌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약제 3종을 가지고 살생물력 및 재질안정성 평가를 실시함. 그 결과 상온에서 100g/m³ 농도로 72시간 처리할 경우 훈증소독 효과를 얻으면서 주요 국가유산 재질에 안정적인 결과를 보임.

대상 약제	시험편	연구 결과
산화에틸렌 14% + 메틸 브로마이드 86%	- 지류 : 닥지(무염색), 필터페이퍼	- 침투력 평가 : 약제 처리기준(100g/m ³ , 72시간) 대로 처리할 경우 훈증소독 효과 양호 - 재질안정성: 안정적
산화에틸렌 15% + HFC _{134a} 85%	- 섬유 : 삼베, 모시, 면, 견 (무염색) - 안료 : 호분, 남청, 주사, 자황, 뇌록	- 침투력 평가 : 약제 처리기준(200g/m ³ , 72시간) 대로 처리할 경우 훈증소독 효과 양호 - 재질안정성: 안정적
산화에틸렌 20% + CO ₂ 80%	- 금속 : 구리, 납, 은, 철	- 침투력 평가 : 약제 처리기준(200g/m ³ , 72시간) 대로 처리할 경우 훈증소독 효과 양호 - 재질안정성: 안정적

(2) 친환경 생물방제 연구

- 훈증소독을 대체하기 위한 생물방제 방안으로 이산화탄소·질소·아르곤 등 불활성 기체를 이용한 저산소 처리, 고온 또는 저온 처리, 방사선 처리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였으나,
-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저산소나 열처리 등 친환경 방제법은 일부 박물관 등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훈증소독을 대체하기는 어려움.

생물방제법	장 점	단 점
저산소 처리	국가유산 손상 없음	살생물력 약함 전용 챔버 필요: 처리량 한정적
저온 처리	영하 수습도 온도 유지시 충균 제거 효과 높음	국가유산 재질에 따라 손상 가능 냉동고 필요: 처리량 한정적
고온 처리	저온 처리보다 단시간에 충균 제거	국가유산 재질에 따라 손상 가능 챔버, 용기 필요: 처리량 한정적
방사선 처리	친환경 생물방제법 침수 피해를 입은 대량의 기록물 처리에 유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고가의 장비가 구비된 장소에서만 처리 가능(원자력연구원)

○ 연구결과

-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산화에틸렌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약제를 사용한 훈증처리가 국가유산에 가장 적합한 방제법으로 확인됨.
-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산화에틸렌 훈증이 불가피하며 약효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처리가 필요함.
- 훈증작업 시 작업자(관람객) 및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작업 안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 교육 및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철저 필요.

참고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가. 살균제 나. 살조제[殺藻劑: 물놀이시설, 수족관 등의 조류(藻類)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살서제(殺鼠劑: 쥐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라. 살충제 마. 기피제(기피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바. 목재용 보존제 사.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아.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 제품보존용 보존제 차.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카. 섬유·가족류용 보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타. 건축자재용 보존제 파. 재료·장비용 보존제 하. 사체·박제용 보존제 거.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 ※ 산화에틸렌(살균제)의 승인유예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및 화학제품안전법 부칙<법률 제15511호, 2018. 3. 20.>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제1호에 따라 ‘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음.

참고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 조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군수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정의)

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2.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정의)

10. “처리물질”이란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생물체(바이러스 및 균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정의)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ナイフ·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화장품법」 제2조(정의)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